#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표준번호: NEX1(C)-340-01

제정·개정·폐지권자			구매기획팀장	
제	정	일	자	2018.08.01
개	정	번	호	1
기	안	부	서	구매기획팀

# LIG넥스원

제정일자: 2018.08.01

개정일자 : 2022.11.01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 1

페이지: 1/14

### ■ 개정이력 일람표

No.	년 월 일	구 분		71 72 ( 21 01 ) 11 0	
		확인	개정	개 정 (확 인)내 용	기록자
0	2018.08.01			- 제정	김국록
1	2022.11.01		•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실천사항 반영	허동근
2	2023.11.01		•	-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허동근

- (주) 1. 개정내용은 중요한 사항만 기록 하십시오.
  - 2. 개정이력이 1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앞의 이력을 삭제하십시오.

제정일자: 2018.08.01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 1

개정일자 : 2022.11.01 페 이 지 : 2 /14

### 제 1 조 (목적)

본 기준은 협력회사가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당사가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협력회사

구매관리 프로세스(NEX1(C)-310)의 신규등록 및 분류 기준에 따라 거래가 가능한 상태의 등록거래선 중 하도급거래의 수급사업자를 의미한다.

#### 제 3 조 (계약체결인프라구축)

-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 가. 대기업은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체결방식 종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의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 ②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④ 지명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나. 대기업은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적인 선택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 [계약 방식 선택의 기준]

거래상대방 물품의 중요도	많음(5 개 이상)	적음(5 개 이하)
높음	제안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낮음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제정일자: 2018.08.01

개정일자 : 2022.11.01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 1

페이지: 3/14\_

# [계약체결방식의 선택 요건]

[계약체결방식의 ·	선택 요건]			
계약체결방식	선택 기준			
(1) 수의계약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① 물품의 제조 및 구입 - 특허품, 실용신안품, 의장등록품 - 정부 고시가격에 준하는 가격의 물품 - 품질,기술 등에 있어서 다른 적합한 거래선이 없는 물품 - 설계부서에서 선정한 표준품의 단일제조사에서 구입해야 하는 물품 - 협력개발품을 양산에 적용하는 물품 - 보안, 단납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물품 - 구매전략 또는 협상조건으로 구매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 - 기존 공급물량에 대해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② 용역,기타 - 학술연구,설계,감리,조사,측정,시운전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나) 천재지변·돌발사고 복구, 긴급한 행사 등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다) 동반성장 및 당사의 협력회사 육성 정책 상 특정회사와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2) 지명경쟁계약	<ul> <li>(가) Sourcing Group 에 분류된 품목을 계약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군의 협력회사 Pool 의 협력회사를 지명하여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한다. 단, Sourcing Group 에 분류된 품목이라도 상기 "(1)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li> <li>(나) Sourcing Group 의 협력회사 Pool 에 소속되지 않은 신규발굴된 협력회사가 있는 경우 Sourcing Group 의 유사 또는 동일 품목군의 협력회사 Pool 의 협력회사와 함께 지명하여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한다.</li> <li>(다)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의하여 관계부서의 인허가 또는 특수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또는 조건을 만족하는 협력회사를 지명하여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한다.</li> </ul>			
(3) 제한경쟁계약 (4) 일반경쟁계약	협력회사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규등록 시 최소기준을 심사하고, Sourcing Group 의 품목군별 우수 협력회사 Pool을 운용하는 구매정책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의 계약방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객이 물품구매에 대해 제한경쟁계약을 지정하는 경우 제한 또는 일반경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정일자: 2018.08.01

개정일자: 2022.11.01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 1

페이지: 4/14

2.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 제안 마당을 운영한다.

3.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RPM 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회사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회사 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 나.협력회사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업체들끼리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 4.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 제 4 조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 1. 서면의 사전 교부

- 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나. 하도급거래 계약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 다.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 계약서를 먼저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라.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마.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가. 구매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 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이고 법률이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 조정 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가능)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정일자: 2018.08.01

개정일자 : 2022.11.01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 1

페 이 지: 5 /14

- 다.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라. 원가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 및 법률이 정하는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협력회사 규모, 기술 수준 등 협력회사별 특성에 따른 임율을 책정하여야 한다.
- 마.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 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 바.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
- 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를 금지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제정일자: 2018.08.01

개정일자 : 2022.11.01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1

페 이 지: 6/14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위탁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14)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아.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미조정 행위를 금한다.
  - (1)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2)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3)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재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4)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회사에게 통지(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 자. 다음에 해당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행위를 금한다.
  - (1)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교환, 단가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 3. 명확한 납기

- 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나.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회사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제정일자: 2018.08.01

개정일자: 2022.11.01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 1

페이지: 7/14

다. 협력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 4. 객관적 검사기준

- 가. 목적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회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회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 라. 검사 전 또는 검사기준 중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 5. 합리적인 대금지급기일 결정

- 가. 협력회사가 납품한 목적물은 월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하여 마감하고, 그 금액은 마감일로부터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나. 협력회사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받은 일로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한다.
- 다.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라.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 마.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협력회사에게 지급한다.
- 바. 대금을 어음대체 결재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재 승인일을, 외상매출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재일을 말함)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정일자: 2018.08.01

개정일자: 2022.11.01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 1

페이지: 8/14

사.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재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력회사에게 지급한다.

아.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분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을 처리한다.

#### 7. 계약 해제·해지

- 가.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한다.
- 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가 발생했을 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3)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파산·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부속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 되어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성적서 위변조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6) 사전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계약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한 경우
  - (7)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된 때
- 다.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 (1) 본 계약 또는 부속계약,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공급자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정일자: 2018.08.01

개정일자 : 2022.11.01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 1

페 이 지: 9 /14

(3)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등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협력회사 평가기준에 의거 협력업체 재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거래중지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핵심제조 및 기술인력의 현저한 이직현상발생 등 4M의 주요변동사항 발생으로 품질/납기에 심각한 위험발생이 예측될 경우
  - (나) 회사 매각, 분할, 합병 등 경영 관련 주요변동사항 발생으로 수요자의 사업수행에 현저한 위험발생이 예측될 경우
  - (다) 수요자의 협력회사 평가결과 계약해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5)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계약불이행에 대한 최고 통지(문서 등) 이후 7일 이내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 (6) 당사가 유관기관(방위사업청, 국과연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또는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8.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한다.

- 가. 협력회사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당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다. 정상적으로 개발·제조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 직원을 동원하여 개발·제조를 하게 하는 행위
- 라. 협력회사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마. 협력회사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행위
- 바.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정일자: 2018.08.01

개정일자: 2022.11.01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 1

페이지: 10 /14

#### 9.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 각 목에서 명시한 사항은 지양한다.

- 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나.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다.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마.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바.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 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사. 법정서류를 3 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 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아. 거래종료일부터 3 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자.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 10.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에서 명시한 사항은 지양한다.

협력회사로 하여금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 11.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에서 명시한 사항은 지양한다.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적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제정일자: 2018.08.01

개정일자: 2022.11.01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 1

페이지: 11 /14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 12.부당특약 행위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 각 목에서 명시한 사항은 지양한다.

-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나.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적을 설정하는 행위
-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기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라.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제 5 조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계약이행)

#### 1. 민법 등 관련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한다.

#### 2.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 교부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 인하의 경우 단가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해결한다.

####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한다.

#### 4.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를 금지한다.

- 가.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 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나. 발주자, 외국 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다. 발주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이

제정일자: 2018.08.01

개정일자: 2022.11.01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 1

페이지: 12/14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라.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마.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바. 협력회사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사. 협력회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아.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5. 부당한 반품 행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반품 행위를 금지한다.

- 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다.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라.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마.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바. 협력회사 이외의 제 3 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 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사. 협력회사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6.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를 금지한다.

- 가.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발주자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나.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제정일자: 2018.08.01

개정일자: 2022.11.01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 1

페이지: 13 /14

다.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라.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회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마.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거나 원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사.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협력회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차.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카.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타.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파.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 환차손 등을 협력회사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행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를 금지한다.

- 가.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다. 기타 협력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8. 기술자료 제공 강요 행위

제정일자: 2018.08.01

개정일자 : 2022.11.01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 1

페이지: 14/14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에게 다음의 기술자료를 당사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력회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당사 또는 제 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다.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9. 기타 부당 행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당 행위를 금지한다.

- 가. 당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회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 나.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다. 협력회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라. 탈법 행위

- (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회사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3)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협력회사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마.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회사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가 사용하는 자재를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가 구매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 바.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1) 협력회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장비 등을

제정일자: 2018.08.01

개정일자: 2022.11.01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규칙

개정번호 : 1

페이지: 15/14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협력회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원사업자가 구입, 사용 또는 제 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 제 6 조 (부칙)

- 1. 이 기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기준은 2022년 11월 1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 3.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부로 일부 개정한다.